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3년 05월 09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: 시그니처자산운용

(영문명) Signature Asset Management Co., Ltd.

(홈페이지) http://www.signatuream.co.kr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, 13층(여의도동, 율촌빌딩)

(전 화) 02-6337-0083

대 표 이 사 : 권영철

담 당 임 원 : (직 책)이사

(성 명)임주렬 (전 화)02-6337-0031

작 성 자: (직 책)과장

(성 명)김영기 (전 화)02-6337-0059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 유상증자 결정

| 1. 신주의 종류와 수  | 보통주식 (주) | 120,000주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기타주식 (주) | -            |
| 2. 1주당 액면가액 ( | 원)       | 1,000원       |
| 3. 증자전        | 보통주식 (주) | 1,500,000주   |
| 발행주식총수 (주)    | 기타주식 (주) | -            |
| 4. 자금조달의 목적   | 시설자금 (원) | -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운영자금 (원) | 300,000,000원 |
|               | 타법인 증권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취득자금 (원) | -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기타자금 (원) | -            |
| 5. 증자방식       |          | 주주배정증자       |

## 【주주배정증자의 경우】

| 6. 신주 발행가액              | 확정발행가       | 보통주식 (원)    | 300,000,000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기타주식 (원)    | -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정발행가       | 보통주식 (원)    | 확정예정일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기타주식 (원)    | 확정예정일        |
| 7 바채기 시작바버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발행사 자율 결정   |              |
| 7. 발행가 산정방법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(할증율 150%)   |
| 8. 신주배정기준일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023.04.26. |              |
| 9. 1주당 신주배정주            |             | 0.08        |              |
| 10.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(%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|
| 11. 청약예정일               | 우리사주조합      | 시작일         | -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7 4/17 2-19 | 종료일         | -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주주         | 시작일         | 2023.04.27.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종료일         | 2023.04.28.  |
| 12. 납입일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023.05.02. |              |
| 13. 실권주 처리계획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|              |
| 14. 신주의 배당기신            | -일          | 2023.01.01. |              |
| 15. 신주권교부예정역            | 길           | 2023.05.03. |              |
| 16. 신주의 상장예정            | 일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|              |
| 17. 대표주관회사(직접공모가 아닌 경우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|
| 18.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|
| -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|
| - 신주인수권증서               | 의 매매 및 마    | 해당 없음       |              |
| 담당할 금융투기                | 사업자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9. 이사회결의일(결            | 정일)         | 2023.04.26. |              |
| - 사외이사 참석여              | Ħ.          | 참석(명)       | -            |

| 불참(명)                | -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- 감사(감사위원)참석 여부      | 부     |
| 20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  | 부     |
| 21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| 해당 없음 |
| 22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| 해당 없음 |
| 2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| -     |

### 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유상.무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한다.

#### 【유상증자에 관한 사항】

- 주1) "신주의 종류와 수", "증자 전 발행주식총수", "신주 발행가액"에는 보통주식과 기타주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
  - 가. 보통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
  - 나. 기타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상기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
- 주2) "증자전 발행주식총수"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.
- 주3) "증자방식"에는 주주배정증자, 주주우선공모증자,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.
- 주4) "기타주식에 관한 사항"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에 관한 정관의 근거,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. 해당 주식의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-4-3조 (다양한 종류의 주식)의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.
- 주5) "신주발행가액"은 보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발행가를, 예정가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발행가 및 확정예정일을 기재한다.
- 주6) "발행가 산정방법"은 기준주가 결정방식 및 적용 할인율 또는 할증율 등을 기재한다. 이 경우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보고일 현재 이사회 등에서 정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말한다.
- 주7) "신주발행가액"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"발행가 산정방법"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.
- 주8) "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"은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-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하고,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.
- 주9) "1주당 신주배정주식수"는 소유주식 1주당 유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

-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10) 【제3자배정 근거, 목적 등】의 "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"에는 3자배정 증자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회사의 정관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"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"에는 3자배정 증자의 사유, 증자대금의 사용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11) 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의 "회사 또는 최 대주주와의 관계"에는 최대주주,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.
  - (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, 최대주주인 (주)ABC의 임원
- 주12) 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의 "선정경위"에는 3자배정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, "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"에는 이사회결의일 전후 6월 동안의 회사와 배정대상 제3자와의 거래내역 및 향후 계획(제품매출·매입, 자산매각·매수, 담보제공 등제반거래 포함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"비고"에는 보호예수 기간 등을 기재한다.
- 주13) 【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】에는 제3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신주인수를 통해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에 기재한다. 이 때 "최대주주"란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하며, 이 경우 "금융회사"는 "법인 또는 단체"로 본다.
- 주1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, 신주권교부예정일, 단주처리 방법,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, 배당기산일 등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"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"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5)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6) "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"는 해당 공시사항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"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)"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